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)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3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**과태료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**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, 분할납부 신청하여 승인받은 과태료 납부 당사자에게 『질서위반행위규제법』 제24조의3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4에 따라 그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, 취소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, 부재 등으로 **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**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**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**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**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**함과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 제53조에 의거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관련법령

-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(과태료 징수유예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(징수유예 등의 취소)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기타 관련사항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, 국세징수법 등 참조

4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(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)  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-2110-1371)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※ **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% 가산금과, 매월1.2%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** 가산하고, 미납시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**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**합니다.

(단위:원)

연번	세목	고지번호	체납자	체납자 실명번호	최초부과 과태료 금액	체납자 주소
1	과태료	0178200004530000572	(주)에이엔서마켓팅	108-86-021** 110111-49077**	3,000,000	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38, 10-동 1***호 (신대방동, 동작상매빌)